

행 정 자 치 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근린공원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지원단 ○○○○ ○○○

내 용

○○○○ ○○○은 2012. 8. 22.부터 2014. 7. 31.까지 부산광역시 ○○○○ 지원단장으로써 ○○근린공원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부산광역시(구 ○○○○과)에서는 부산진구 ○○동 산○○-○번지내에 1944년 ○○근린공원 지정된 후 방치된 도심공원(60,490m²)에 대해 생태체험센터(2,000m²), 생태습지, 우수저류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152억원을 투자하여 시민공원을 연계하는 도시 녹지네트워크 조성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1. 도시공원 세부시설 결정 업무 소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교양시설⁴⁵⁾은 공연장전시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으며, 운동시설⁴⁶⁾은 골프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등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4. 9. 11.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근린공원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표 1】과 같이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을 교양시설인

45) 교양시설은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과학관, 장애인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정한다), 학생기숙사(「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한다),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민속놀이마당, 정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46) 운동시설은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생태체험센터로 위법·부당하게 세부시설 변경 결정 고시하였다.

【표 1】 세부시설 결정 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 면적(㎡)	시설 면적(㎡)	구조	규모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825.0	825.0	-	-	-	-	-	폐지
	변경	소 계	1,054.5	1,054.5	-	-	-	-	-	
	기정	5-1 주민운동 공간	825.0	825.0	-	-	-	-	-	
	변경	5-1 주민운동 공간	-	-	-	-	-	-	-	
	신설	4-1 마을웰빙 마당	1,054.5	1,054.5	-	-	-	-	-	
교양 시설	신설	소 계	3,721.8	3,721.8	-	-	2,148.03	4,035.10	-	
	신설	5-1 숲속교실	188.4	188.4	-	-	-	-	-	
	신설	5-2 생태체험 센터	2,557.5	2,557.5	철골 철근콘크리 트구조	지하2층, 지상2층	2,148.03	4,035.10	-	
	신설	5-3 자연학습 마당	549.7	549.7	-	-	-	-	-	
	신설	5-4 복원관찰대	48.0	48.0	-	-	-	-	-	
	신설	5-5 숲체험원	304.9	304.9	-	-	-	-	-	
	신설	5-6 복원관찰대	73.3	73.3	-	-	-	-	-	

※ 자료근거 : 부산광역시 제2014 -0000호 공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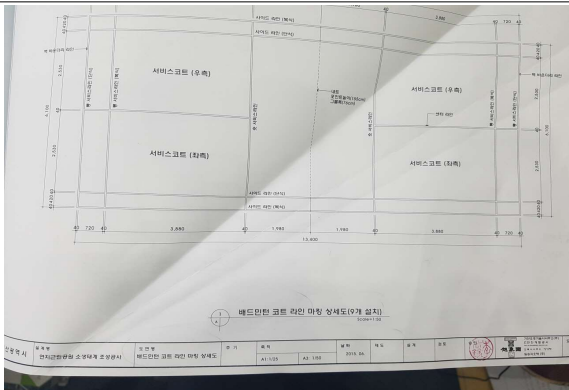
또한 배드민턴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주민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여 운동시설로 변경 고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운동 공간인 운동시설을 반대로 축소 변경고시 하였으며, 설계도서에는 위법 부당하게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으로 설계 완료하였으며, 설계도서에 따라 배드민턴장으로 시공(배드민턴장 바닥 및 라인마킹 설치, 충격완화 고무 설치, 철재로 만든 수납식 관람석 등을 설치 완료)한 사실이 있다.



조감도



실내 배드민턴장



설계도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관람석

2. 건설기술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과)에서는 2013. 3. 15. ○○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3. 5. 10. 환경부(○○○○과)에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국고 보조 사업계획서와 152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국고 보조 사업계획서의 생태체험센터(면적 : 2,100㎡, 35억원)는 자연친환

경적인 건축물로서 형태, 구조, 색채 등 건축물 외관이 연지공원의 지형, 산세 등 제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건축물 내부는 체험, 교육 등의 복합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이용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목적 홀의 주요기능 및 용도를 전시, 공연, 레크레이션, 행사 등의 다목적 이용공간으로 규모 1,300㎡이상, 높이 9m 이상을 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 후 2014. 1. 7. ○○근린공원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을 설계를 공모하여 2015. 5. 12. (주)○○조경기술사사무소와 3개사와 계약 체결(451,000천원)하여 2014. 5. 12.부터 2014. 9. 11.까지 추진완료 하였다.

한편 2014. 5. 26. ○○근린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시 민간전문가 4명, 시청 4명, 환경부 2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민간전문가로 참여한 ○○○ 교수는 ‘생태체험센터는 목적에 맞게 조성하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부 참석자는 체육시설 설치시 철 시설물을 배제하고, 사업목적은 유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후 ○○○○과(구 ○○○○과)에서 2015. 4. 15.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여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표 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건설기술심의 검토 의견 조치계획서

심의	심의 위원	지적내용	조치결과	예산증 감	지적 유형
사전 심의	○○ ○위원	생태체험센터에 부합되는 공간(평면) 계획 및 기능별(시설별)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주된공간(평면)계획이 생활체	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비 국비(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보조사업으로서 생태체험센터는 생태와 관련된 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사전	-	기타 원안 적용

		육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관련기관별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세부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 검토요함	협의후 계획된사항이며,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운동시설을 겸할 수 있도록 다목적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음. 환경부 사업취지를 감안 운동전용시설로 세부시설변경은 어려운사항으로 판단됨		
	○○ ○위 원	지하층 홀 및 공공이용이 많은 용도시설 등은 바닥 마감재를 마모에 강한 재료를 선택요함	주출입구 로비의 바닥마감재를 내구성이 강한 화강석으로 변경함	증 25백만원	내구성 증대
	○○ ○위 원	지하 1층 공용홀 및 지상1층 전시 홍보공간 바닥은 마모에 강한 바닥재를 사용	지하 1층 공용홀 및 지상1층 전시 홍보공간 바닥은 마모에 강한 바닥재를 변경함	증 25백만원	내구성 증대
본 심 의	○○ ○위 원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소생태계를 복원하고 조성하는 본과업의 주된 성격을 고려하면 과연 2,000㎡가 넘는 생태체험선택의 건축구조물, 그리고 3,000㎡의 규모의 큰건축물(교양시설)의 설치는 본래 생태계 복원 및 조성이라고하는 과업의 취지에 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됨 물론 큰 건축구조물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생태환경체험, 생태운동장, 생태놀이터, 그리고 생태환경 관찰데크 등의 설치는 권장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환경에 조화롭지 않은 규모가 큰 건축 구조물의 설치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면 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체험센터의 규모는 지역주민,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임		원안 적용

※ 자료구성 : 부산광역시 ○○○○과에서 제출

위와 같이 건설기술심의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공원조성 세부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 검토요함”, “3,000㎡의 규모의 큰 건축물(교양시설)의 설치는 본래 생태계 복원 및 조성이라고 하는 과업의 취지에 적합성이 없다고 판단됨”, “지하 1층 공용홀 및 지상1층 전시 홍보 공간 바닥은 마모에 강한 바닥재를 사용”을 지적하였음에도, 환경부 교부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운동시설을 교양시설로 변경고시하고, 설계와 시공은 운동시설

로 배드민턴장에 사용되는 경질 단풍나무 후로링과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준공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 체육시설 설치시 철제 시설물을 배제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배드민턴장 내에 철제 수납식 관람석 설치하는 등 부적합 운동시설(35억원 상당)을 신축하여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도시소생태계조성사업 취지에 맞게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변경 고시 등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